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강 자전거 도로 안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아래 [표1]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

구분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km	46.08	168.16	4.86	0.66

※ 자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범위 안에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 난간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장소는 아래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표2] 안전난간 설치 구간

-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바다 · 호수 · 하천 · 늪지 ·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
- 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구간
- 내리막 경사가 심하여 난간의 설치가 유리한 구간
- 기타 사유로 필요한 구간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구간
 - 기타 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따라서 하천 등이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변 좌안 구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2017. 09. 26.)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동 ○○○-○○번지 일원 등 3개 구역(98m)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하천법면과 인접하여 있고 하천과 자전거도로의 높이 차가 4.0~4.5m로 추락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표3] ○○강변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현황

연번	노선명	위험지역 위치	연장(m)	하천과 도로 높이차(m)	미설치 사유
1구간	○○강변 좌안	○○동 ○○○-○○번지 일원	36	4.0~4.5	효율적인 유지관리
2구간	○○강변 좌안	○○동 ○○○-○○번지 일원	14	4.0~4.5	효율적인 유지관리
3구간	○○강변 좌안	○○동 ○○○-○○번지 일원	48	4.0~4.5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림] ○○강변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통보]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 좌안 구간 자전
거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
다.